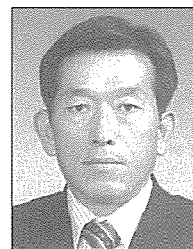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업생산조직의 현황과 정책방향 문제점



김 휴 현 사무관
농림부 경영인력과

1. 농업법인제도 현황

가. 농업법인제도

정부는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을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법인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1994년 농업법인에 농업생산, 가공·유통 기능까지 포함한 생산자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

하면서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으로 농업법인 육성 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동 법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하는 자가 설립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	· 기업적 농업경영
근 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발 기 인	· 농업인 5인 이상	· 합제(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2인 이상), 유한(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3인 이상)
의 결 권	· 1인 1표제(인적 구성)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 출자지분(물적 구성) ·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 자	· 농지, 현금, 현물	· 농지, 현금, 현물
출자한도	· 제한 없음	·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3/4
농지소유	· 제한 없음	· 대표이사 및 집행이사 1/2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1/4 이상

나. 농업법인 현황

농업법인 수는 2000년 5,208개소에서 2004년 5,492개소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의 연간 총 매출규모는 2000년 1조 7,003억원에서 2004년 3조 4,773억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 당 자산은 2000년 11억 8백만원에서 12억 6천7백만원으로 14.3% 증가하였으며,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86%에서 2004년 197%로 평균89.3%p가 감소하여 안정성이 증대되었다.

2004년 법인 당 출자금은 2억2천5백만원이며, 평균 출자자수는 20명 선이고, 농업법인 당 평균 매출액은 2000년 5억5백만원에서 2004년 9억8천5백만원으로 95%가 증가하였다.

특히,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이 2000년 332개에서 654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인별 당기 순이익은 2000년 5백만원에서 4천3백만으로 8.6배가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의 평균 조사자 수는 8.2명으로 중소기업의 18.4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 농업법인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역할을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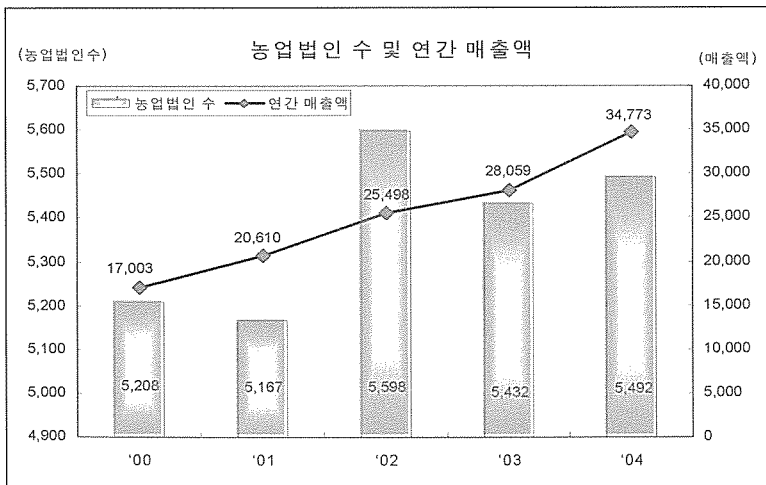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농업법인의 지원우대로 정부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개별 경영체로 전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토지를 구입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법인에 대한 나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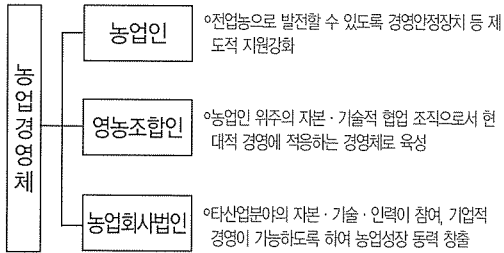
2. 농업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가. 추진배경 및 실적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와 농업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2004년부터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04년6월25일 1차로 농업인 위주의 농업관련 세금제도를 농업법인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 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창업에서 성숙과 구조조정 전 과정에 걸쳐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여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대책을 종합·점검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문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정보화 기반 부족 등이며, 과도한 표시·광고 등 규제와 세금 부담도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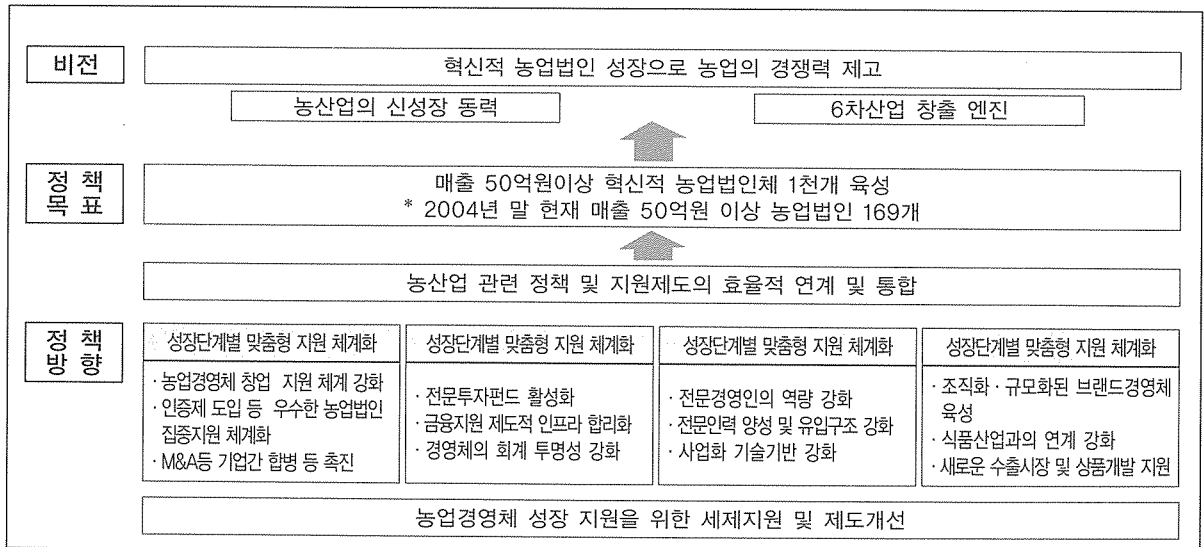
2006년 5월 19일 2차로 한·미 FTA에 대응하여 관련 업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

< 제1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주요 추진실적 >

<p>◇ 법인 성장유도방향으로 세제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창업 후 2년 내 취득 농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 농지구입 정책자금 이자를 농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 · 농업법인의 농지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 면제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업용 창고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간(2005~2009)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p>◇ 외부자본과 전문인력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제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격기준에 지자체 농업공기업 포함(추진 중) · 농업법인에 관광사업 허용 등 부대사업 제한 완화(추진 중)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지분과 농지소유제한 완화(1/2~1/4)
---	---

나.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안

가)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선량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법인 설립완료시 시장·군수에 설립사실 등을 통보토록 농업법인 설립 통보제를 제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7개소)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제도에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 받고 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 및 회계투명성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으로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 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업회계기준 정착과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 → 30억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등 투자방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나 BT등 고수익분야로 편중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가 미흡하므로 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2006현재 : 180억원)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농업전문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이 농식품·유통업분야에 더 많이 집중(60%)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 경영주의 경영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농가조직화·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업법인의 경영·기술·정보화 기반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화 기반이 부족하고, 농업법인 성장에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이 중요한 요소이나 상품 개발 등 사업화 기술 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기법, 특허 등 컨설팅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연구개발 참여비율을 확대(2006: 총사업비의 6% → 2010 : 20%)하며, 과제선정 평가위원단에 농업법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협력하여 농업법인의 특허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농업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체조직 기능 증진 효과, 영양학적 유용성 등 표시·광고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통해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말에서 3년 연장하고, 2009년 12월 까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비과세하되 농업 외 소득은 14% 분리 과세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 12월말 도래되는 농업법인 법인

세 감면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화훼 종자류(종구·종묘)에 대한 부가 가치세도 면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차 대책 수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문제는 전문가 연구 용역을 거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